재단법인 정석연구재단
정　　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의료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의료분야의 인공지능(A.I.) 연구·개발 및 의료영상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업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정석연구재단(이하"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 및 부설의료기관의 소재지) ①법인의 주사무소는 "경상남도 김해시 부원동 614-19번지 골든빌딩 503호"에 둔다. <개정 2021. 11. 25>

② 법인에서 운영하는 부설의료기관은 "경상남도 김해시 부원동614-19번지 골든빌딩 506호"에 둔다. <개정 2021. 11. 25>

제4조(사업)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의료분야의 인공지능 연구·개발사업
2. 의료분야 인공지능 연구·개발을 위한 의료영상 판독사업
3. 의료영상 판독을 위한 의료기관 설치·운영
4. 지역 대학 및 의료산업계와의 공동연구 및 개발사업
5. 지역 교육기관과 연계 또는 단독 교육사업 <신설 2021. 11. 25>
6.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7. 목적사업의 경비 충당을 위한 수익사업

제5조 <삭제 2021. 11. 25>

제6조(수혜평등의 원칙) ① 법인의 사업은 공익목적에 적합하게 수행하며, 수혜자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다.

②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연령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

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삭제 2021. 11. 25>

제2장 임 원

제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1인으로 한다.
2. 이사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3. 감사는 2인 이내로 한다.

제9조(상임이사) ① 제4조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③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와 감사는 임기만료 2월 전에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다만 재적이사가 정관상 이사 정원의 하한선에 미달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재단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5조(이사장 직무의 대행) ① 이사장이 유고 또는 궐위되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이사장 및 상임이사가 동시에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6조(고문)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 약간명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3장 이 사 회

제17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재단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은 그 의장이 된다.

제18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내용을 통보하고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5>

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 <삭제 2021. 11. 25>

제2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자금의 차입 및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사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1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2조(서면 등 결의) ① 의장은 이사회가 요청하는 사항을 서면결의에 붙일 수 있다. <개정 2021. 11. 25>

② 의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온라인 방법을 통한 회의로 의결할 수 있으며, 온라인방법을 통한 회의의 의결권 행사의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신설 2021. 11. 25>

③ 이사회는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해 의사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이사와 감사의 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1. 25>

제23조(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4장 재산 및 회계

제24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가운데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③ 설립 당시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별지1”의 목록과 같다.

제25조(재산의 관리) ① 제21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경비의 조달)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의 수입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7조(회계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8조(예산편성) 법인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결산) 법인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법인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법

인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3월말까지 공개한다.

제31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세계잉여금) 매 연도의 회계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33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사 무 국

제34조(사무국) ① 법인의 업무집행 및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 및 기타 필요한 사무직원을 두며,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 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수익사업

제35조(수익사업) ① 법인은 제1조 법인의 목적과 제4조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 목적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부서의 사업종류별로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36조(수익사업의 기금관리) 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재단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7장 보　칙

제37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38조(법인해산) ①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39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삭제 2021. 11. 25>

제4조(부칙의 표시) 부칙은 개정정관마다 표시하되 개정정관의 부칙에는 개정 정관의 허가연월일을 기재한다.

1. 이 규정은 201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이 변경 규정은 202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